교육과정 혁신 운영위원회 규정 신구대조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고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**교육혁신단장이 되고, ~~위원은 교무처장, 교육혁신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개설된 모든 학부(과)의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~~**	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이 **된다.**	문구 수정
	② 위원은 교무처장, 교육혁신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, 교육과정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	항 추가
	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	항 추가
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센터과장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서기를 둘 수 있다.	**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센터과장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서기를 둘 수 있다**	항 순연
	부 칙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**(제2조)**은 **2023년 1월 1일**부터 시행한다.	